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중앙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이혜은

전화 02-530-4780 / 팩스 02-536-5410

보도자료

2022. 5. 11.(수)

제 목

로톡 관련 변호사법위반 등 고발사건 불기소 처분

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 널리 알려진 경우의 불기소 사건(제10조 제1항 제2호)
 - 피의자, 처분일시, 죄명, 처분주문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0조 제2항)
 - 혐의사실 요지, 불기소이유 요지,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중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(제10조 제3항)

※ 2022. 5. 11.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

-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(부장검사 강범구)는 온라인 법률플랫폼 '로톡'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.

1] 사건 당사자

- 피의자 : A○○[주]B○○ 대표, (주)B○○
- 고발인 : C○○○단체

② 피의사실의 요지

- ① '로톡' 홈페이지 및 앱을 개설하여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 중 광고료를 지불한 변호사들만을 검색목록 상단에 노출하게 함으로써 로톡 이용자들을 특정 변호사들에게 소개·알선 또는 유인, ②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'AI 형량예측 서비스'를 통해 예상 처벌 및 형량, 선고 비율 등을 제공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, ③ 변호사가 아님에도 이익을 목적으로 '형량 예측부터 변호사 상담까지' 등이라고 광고함으로써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기재하는 등 **【변호사법위반】**
-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함으로써 **【개인정보보호법위반】**

③ 사건 경과

- '20. 11. 20. 고발장 접수(서울중앙지검)
- '20. 11. 26. 서초경찰서 이송('21. 2. 서울시경 이송)
- '21. 12. 29. 불송치 기록 접수
- '22. 2. 17. 고발인 이의신청
- '22. 5. 11. 서울중앙지검, 혐의없음 처분

④ 수사 결과

- 변호사법위반 혐의 관련
 - 로톡 홈페이지·앱에서 광고료 지급과 무관하게 모든 가입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고,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이 동일하며, 이용자의 상담료는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될 뿐, 로톡이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 상담·수임 관련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플랫폼 운영방식은 특정 변호사 소개·알선·유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'혐의없음' 처분하였음

※ 이와 관련하여 **법무부 유권해석**(플랫폼 운영 법인의 변호사 관련 정보 제공 등은 광고로서 특정 변호사 등의 소개·알선·유인라고 보기 어려움), **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**(로톡이 허위·과장·기만 광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)이 있었음

-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금지는 **유상성**(금품·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)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, 'AI 형량예측 서비스'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'혐의없음' 처분하였음
- '변호사에게 15분만에 사건진단', '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' 등 로톡의 광고문구만으로는, **일반인들로 하여금 '로톡이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한다'는 뜻으로 인식되게 할 정도에 이른다**고 보기 어려워 '혐의없음' 처분하였음

○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

- 로톡 측은 실제로 '대한민국 법원 사이트' 내 판결문 열람서비스를 통해 판례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되고, 위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 트래픽 과부하 등 부정확한 접속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의하면, 고발인의 추정 외에 **판결문 수집 과정에 있어 부정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** '혐의없음' 처분하였음

○ 객관적 판단을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개최

-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간의 대립, 법조계의 이목 집중 등 이 사건의 무게와 과장 등을 고려하여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하여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수사결과에 반영하였음

5 참고 사항

- 본건과 유사한 선례(로시컴, 로스케어, 로켓닷컴 등)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불기소 처분된 바 있고, 대형로펌들도 위 판결문 열람서비스를 통해 판례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있으며,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'유료키워드 광고'도 본건과 같은 구조임

※ **향후에도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검찰권 행사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음** ☑